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0
------	------

2014. 2. 26.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12일, 박운기의원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4.2.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 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박운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증세없는 복지확대’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서비스 영역 중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소득편차와 부의 편중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복지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실제 적용까지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IB를 서울시정에 도입·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 중에서 비용절감, 사회적투자,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의 사업을 사회성과보상계약이 가능한 사업으로 함(안 제4조).
- 사회성과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운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 의무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체결 내용과 사회성과 평가방법, 평가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제10조).
- 중간운영기관과 체결한 사회성과보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4조).
- 중간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근거와 방법을 정함(안 제15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날로 다양해지는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의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효율성 극대화 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과 의의¹⁾

-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은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 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 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함²⁾.

1) 경기개발연구원(2013, 경기도의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방안)과 자본시장 연구원(2012,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방안) 참조.

2) 경제학자 로지 호레시(Ronnie Horesh)가 2000년 「사회정책채권(social policy bond)」를 통해 정부 지출을 보다 비용절감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사회정책채권(SPB) 도입을 제안하였음.

- 2000년대 들어 복지재정 부담에 고심하던 영국과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SIB가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급속한 추세로 확산되고 있음(참고자료)³⁾.
- SIB는 정부가 중간운영기관(SIBIO : Social Impact Bond-Issuing Organization)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공공사업 운영을 조달하게 되며, 약정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 정부가 중간운영기관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구조를 가짐.



3) 영국의 경우 2009년 브라운 총리가 Smarter Government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SIB를 시범운영한 이후 질병예방, 취약아동복지, 노숙자 돌봄, 청년실업 분야에서 각종 사업을 개발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2012년 뉴욕이 골드만삭스가 사회 투자자로 참여해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960만불 규모의 성과연계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앙정부(인력개발, 교육, 소년사범, 장애아동복지 등 7개분야), 매세추세추주(비행청소년분야, 노숙자 주거환경개선) 등에서 빠르게 사업이 확산되고 있음. 호주 역시 뉴 사우스 웨일주에서 2011년 청소년 보호 분야 서비스 공급자 모집을 시작해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SIB를 활용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증세없는 복지확대’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4년 경제정책 방향’ 을 통해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SIB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국내에서도 SIB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이 분야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연구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용어의 정의와 대상사무(안 제2조 및 제4조)

- 안 제2조는 SIB 제도 운영과 계약에 필요한 각종 용어를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용어의 명료한 정의는 향후 사업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
- 먼저, 안 제2조제3호와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외에도 투자·출연기관을 계약 당사자로 포함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외국의 경우에도 공기업이 SIB사업의 주체로 참가한 사례가

없고, 투자·출연기관이 행·재정적으로 시의 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SIB사업의 대상사무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제1항제1호와 같이 대상사업 분야에 대한 제한없이 행정비용이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임의적 해석을 확대할 우려가 있음.
- 선진국들도 재소자 재범률, 청소년 실업대책, 건강관리, 주택·고용관련, 노숙자 지원 등 사업성과와 보상에 대한 평가가 명확한 사회사업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사업 대상 분야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라. 중간운영기관의 선정 등(안 제5조부터 제7조)

- SIB 투자 계약구조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중간운영기관간의 기본계약과 중간운영기관과 투자자간의 계약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투자금 조달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지는 중간운영기관의 역할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중간운영기관 선정과 계약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간운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인력과 기구, 업무능력 등의 선정기준도 제시하고 있음.
- 이 밖에, 안 제7조에서는 중간운영기관에게 불필요한 비용징수 금지, 계약준수 등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시를 대신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간운영기관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건전한 윤리기준을 따라야 하는 등 기본적인 책무를 짐.
- 아울러,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도 발생함.
- 반면, 시는 중간운영기관이 사회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등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국내에 관련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중간운영기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간운영기관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계약사항으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SIB가 구조상 투자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시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SIB 대상사업 지정 이전 단계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임.

라. 사회성과보상계약과 평가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

- 안 제8조는 시가 중간운영기관과 체결하는 사회성과보상 계약에 포함할 주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계약은 시가 당초로 목적으로 하는 예산효율성과 사업성과의 극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SIB 사업 구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목적과 기간,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절차와 기준, 사업비 조달과 보상금 지급 등의 사항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함.
- 다만, 향후 SIB 사업이 다양화될 경우 개별 사업마다 평가 기준이나 대상과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비는 사회성과보상계약과 그 성과에 따라 시가 중간운영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안 제11조는 일정한 절차를 통한 사회성과보상계약의 변경과 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음.
- 사정변경에 따라 사회성과보상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경우 새로운 계약 당사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사회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서비스 수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변경 혹은 해지될 경우의 성과보상에 관한 절차도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마.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부터 제14조)

-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SIB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인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운영사항을 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중간운영기관의 선정과 성과보상 지급 등 시가 수행하는 SIB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과 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해 SIB 사업 최고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고, 관련 전문가와 해당 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적정 위원 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 또한, SIB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보상에 이르는 사업주기가 통상 3~5년으로 중·장기인 사정을 고려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이 밖에도 SIB 대상사업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인 경우가 많고, 시의 재정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을 특정해 혼란을 막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바. 종합의견

- 제한된 정부의 재정상황과 늘어나는 각종 사회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서 SIB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있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관련연구와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과 사회투자 분야에 대한 인식부족, SIB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관들이 충분치 않는 여건 등을 고려한 최선의 사업대상 선정과 치밀한 계약과정이 향후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될 것임.

- 최근 시는 (재)한국사회투자⁴⁾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3년간 총 10억원 규모의 아동공동생활가정 소셜임팩트본드 사업을 국내 SIB 사업 제1호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2014.2.18).
- 양해각서 체결이후 이루어질 실무 협상과 계약과정에서 시의 재정적 효율성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례 제정이전에 대상사업이 선정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의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점을 고려해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2012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수탁기관임.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20
----------	---------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26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사회성과보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조례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조례안의 제명과 용어, 대상사업,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채권 운영에서 사회성과사업 중심으로 조례의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정함(안 조례 제명).
- 나. 사회성과보상, 운영기관 등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다.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조정함(안 제4조).
- 라.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개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운영기관의 선정기준과 의무, 사업성과 평가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업 수행에 유연성을 부여함(안 제7조부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회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사업”이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전적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성과”란 민간이 사회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5.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회사업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서울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사회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사회사업 관리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회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용에”를 “보상사업에”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사업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무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사회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한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

서”로, 같은 조 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투자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전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

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5조제1항 중 “시장 등은 중간운영기관”을 “시장은 운영기관”으로,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 등”을 각각 “시장은”으로 하고, 안 제16조 중 “규칙 등으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u>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u>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성과연계채권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와 예방행정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과 효과를 높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회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u>을 말한다. 2. <u>“사회성과”란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의 결과</u>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사업”이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전적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u>을 말한다. 2. <u>“사회성과”란 민간이 사회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증진된 사회적 편익</u>을 말한다. 3. <u>“사회성과보상”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u>를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란 민간의 투자로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수행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투자·출연한 기관(이하 “시 등”이라 한다)이 사회성과 달성 시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중간운영기관에게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4. “중간운영기관”이란 시 등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 모집,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수행기관”이란 사회성과보상계약 사무로 선정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간운영기관과 수행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6.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란 시 등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한 중간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맺는 약정·계약 또는 직·간접적으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증권 등을 말한다.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5.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회사업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서울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사회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사회사업 관리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회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① 사회성과보상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사전적 예방활동을 통하여 사후적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 행정비용이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정하는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시가 투자·출연한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② 시장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사업

〈삭제〉

〈삭제〉

	<p>〈신설〉 <u>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u> ① 시장은 보상사무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시 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신설〉 <u>제6조(보상사업의 동의)</u>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p><u>제5조(중간운영기관 선정)</u> 시장 등은 사회성과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① <u>중간운영기관의 선정</u>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u>제7조(운영기관 선정)</u>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u>운영기관 선정</u>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선정기준) 시장 등은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 및 기술수준
2. 민간 투자자 모집, 사업수행기관 선정·관리에 필요한 업무총괄·조정능력
3.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관한 이해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4. 재정적인 부담능력
5.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제7조(중간운영기관의 의무) ① 중간운영기관은 시 등과의 사회성과보상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간운영기관은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중간운영기관의 의무이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삭제〉

과보상계약에 명시한다.

제8조(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 시장 등은 사무를 수행할 중간운영 기관을 선정할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

1. 중간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계약사무 및 그 내용
4. 사회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기관 선정방법
5. 사회성과 달성 기준
6. 사회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중간운영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7. 성과평가 시기 및 사업비 지급 시기
8. 그 밖에 계약자 당사자 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제9조(사회성과 평가) ① 시장 등은 사회성과보상계약을 통하여 중간운영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의 사회성과를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명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사회사업

시된 시기에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성과 목표
2.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
3. 평가방법
4. 사회성과의 달성도

② 평가기관은 시, 중간운영기관, 투자자, 사업수행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① 시장 등은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후 사회성과 달성 기준에 따라 중간운영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시장 등은 성과평가결과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계약서상의 성과급을 중간운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간운영기관에 사회성과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 등과 중간운영기관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

기로 합의한 경우

2. 중간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중간운영기관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중간운영기관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중간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사회성과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간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사회성과보상계약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2.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대상 사무 선정
3. 중간운영기관 선정(공개모집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만한다)
4. 평가기관의 사회성과 평가결과 및 달성도
5. 달성도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및 성과금
6. 그 밖에 계약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내부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절반 이내로 한다.

제1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 등의 예산담당 및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위원장 또는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투자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항의 이동〉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신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 등은 중간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

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중간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사회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사업”이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전적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성과”란 민간이 사회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5.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회사업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서울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사회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사회사업 관리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회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무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제9조(사회성과 평가)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사회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투자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사회투자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